

천호역 청년안심주택
「천호역 효성 해링턴 타워」
3차 임차인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10)

공공지원 민간임대

2023. 10. 04.

(주)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차 례 -

1. 개 요	03
2. 공급일정	04
3. 공급현황	05
4.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08
5. 청약 신청 방법	16
6.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추첨	18
7. 계약안내	19
8. 유의사항	20

1

개 요

■ 공급대상주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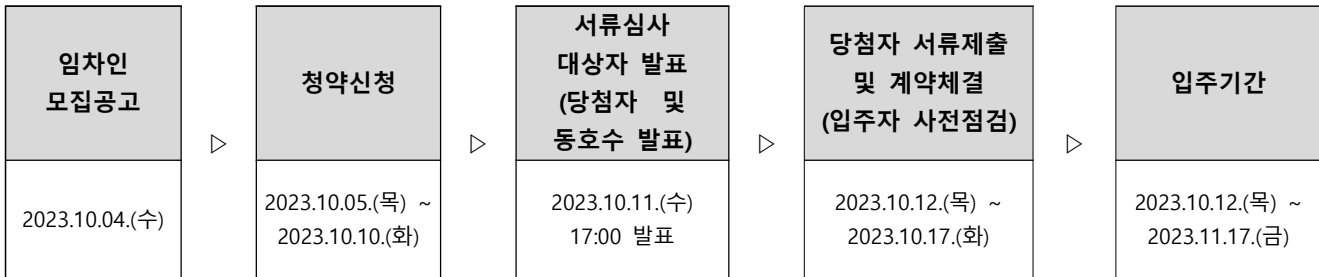
- 주택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610 (5호선, 8호선 천호역 8번 출구)
- 공급호수 : 총 900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78세대 (특별공급 7세대, 일반공급 71세대)
- 단 지 명 : 천호역 효성 해링턴 타워
- 시 행 사(임대사업자) :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시 공 사 : 진흥기업(주) / 효성중공업(주)

-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하여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민간임대 입주자가 기존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고,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하며,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 ※ 자세한 내용은 8p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참조
- 본 주택의 시행사(임대사업자, 이하 임대사업자라 함)는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 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공고일 현재 토지를 담보(사업비 보증상품 가입 등)로 금융권에서 PF대출을 실행하여 사업비를 조달하여 구분 건물소유권 등기부에 담보대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등기 되어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인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최초입주개시일 전 전부보증상품 가입 하였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이 발생)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10.04.(수)입니다.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며, 청약 신청 접수는 PC를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필수)
- 홈페이지 : <https://www.cheonho2030.com>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임대무기기간은 8년이며, 관련 법령에 의해 임대무기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천호역 효성 해링턴 타워 입주지원센터(02-488-7980)를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

공급일정

■ 공급절차 및 일정



- 최초 및 2차 청약 계약자분들은 이번 3차 청약신청 대상에서 제외(중복신청 불가)되며, 신청 시 무효처리됩니다.

- 입주(예정) 일자 : 2023.10.12.(목) ~ 2023.11.17.(금)

- 현장 여건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청약 신청은 당사 홈페이지 <https://www.cheonho2030.com>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방법 : <https://www.cheonho2030.com> 사이트 상단 본인인증 후 청약 신청

- 인터넷 청약 신청 기간 : 2023.10.05.(목) 09:00 ~ 2023.10.10.(화) 18:00 까지 [3일간]

※ 본 주택은 청약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급유형별 사이버모델하우스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청약 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추가 서류 및 자동차 등록 신청자 증빙서류의 경우는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 신청은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1인 1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자의 모든 서류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 미제출 시 당첨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계약체결(입주자 사전점검)은 2023.10.12.(목) ~ 2023.10.17.(화) 기간동안 진행됩니다.

모든 서류는 입주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원본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 미체결 시 청약 신청이 취소되고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 청약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따라 예비입주자(일반공급 세대수의 100% /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 선정을 고려해 일정 비율 이상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2023.10.12.(목) ~ 2023.11.17.(금)예정이며,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 공지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인터넷청약)관련 문의

- 입주지원센터 : 대표전화, 인터넷 청약관련 문의 : 02-488-7980

월~금 10:00~17:00 (점심시간 : 12:00 ~ 13:00)

- 홈페이지 : <https://www.cheonho2030.com>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와 관련한 전화 상담은 입주지원센터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유선·온라인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단지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천호역 효성 해링턴 타워' 검색)

3 공급현황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610
- 공급규모 : 지하7층 ~ 지상32층 2개동 총 900세대 중 78세대 (특별공급 7세대, 일반공급 71세대) 공급
- 공급대상

공급 유형	주거 전용 (타입)	공급 호수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세대당 계약면적(㎡)				발코니 확장면적 (㎡)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면적포함)	합계	
청년	16.09㎡ (16)	7	7	0	16.09	12.73	19.88	48.70	5.06
청년 · 신혼부부	33.28㎡ (33)	22	-	22	33.28	25.10	41.10	99.48	10.11
	35.63㎡ (35A)	29	-	29	35.63	26.59	44.00	106.22	10.49
	35.37㎡ (35B)	20	-	20	35.37	26.67	43.68	105.72	18.33
합계		78	7	71					

- 본 주택은 공급유형별(청년, 신혼부부) 및 주택 타입별로 나뉘며, 청약 신청 시 공급유형별(청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혼부부 일반공급) 및 주택 타입별로 청약 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 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주거 전용(타입)별로 구분되어 청약 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 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으로,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이 포함됩니다.
-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상기 타입별 면적은 준공 시 일부 변경 (±3%내외)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청약 신청 및 계약은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2023.10.12.(목) ~ 2023.11.17.(금) 이며, 당사 현장 사정 등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됩니다.
- 상기 공급호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임대 주택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되며, 관리비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1) 특별공급

- 7세대 [청년(총 7세대)]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만원)

임대보증금 비율		특별공급(주거지원계층용) (한국부동산원 주변 시세의 80% 이하)						
공급 유형	주거전용 (타입)	세대 수	보증금35%		보증금38%		보증금40%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청년	16.09㎡ (16)	7	4,690	40	5,090	38	5,350	37
합계		7						

※ 제시된 비율 외 임대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 전 선택한 임대조건(임대 보증금 비율)은 계약 갱신 시에도 변경 불가합니다.

(2) 일반공급

- 71세대 [청년, 청년·신혼부부(총 71세대)]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만원)

임대보증금 비율		일반공급 (한국부동산원 주변 시세의 95%)						
공급 유형	주거전용 (타입)	세대 수	보증금35%		보증금38%		보증금40%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청년 · 신혼부부	33.28㎡ (33)	22	10,120	68	10,990	65	11,570	63
	35.63㎡ (35A)	29	10,480	69	11,370	66	11,970	64
	35.37㎡ (35B)	20	10,480	69	11,370	66	11,970	64
합계		71						

※ 제시된 비율 외 임대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 전 선택한 임대조건(임대 보증금 비율)은 계약 갱신 시에도 변경 불가합니다.

(3) 유의사항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 단위로 5%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 한도에서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임대사업자가 서울시와 협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 시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 금액과 수선 유지 및 원상회복의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연체료, 위약금,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입주 시기는 2023.10.12.(목) ~ 2023.11.17.(금) 중 선택하여 입주하시면 됩니다. (변경 시 개별 통보) 월 임대료의 기산일은 입주일로부터 발생하며, 월 임대료는 당월납이며, 납부일은 매월 27일입니다.(공휴일 등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실 입주 이전 또는 실 입주일 당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임대사업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 납부확인,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불출하며,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거 시 임대보증금의 일부(300만원)를 유보금으로 우선 공제 할 수 있으며, 그 유보금에서 원상 복구 비용(임차인 과실분)을 정산 후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임대사업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공통사항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10.04.(수)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또한 산정 시점은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다. (단,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민간 임대 입주자가 기존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고,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하며,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가액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민간임대 입주자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구 분	1순위	2순위(25% 이하)		3순위	그 외
대 상	입주자 필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나눔카	거주자우선주차	입주자 일반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주차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협의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민영주차장 요금	민영주차장 요금

-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배정원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이 아닌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외부정기 자동차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10.04.(수)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

차종		운영방식	등록기준
장애인용 자동차			- 장애인의 경우 -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유자녀용 자동차			- 임신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생 업 용	자동차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다만, 청년주택에서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기계식)와 규모(주차장입구 높이 면적 등)에 따라 운행 가능 -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이륜차 (125cc이하)	택배 및 배달용 ※ 필수주차장 수량과 무관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 -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등록세대는 주차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자동차 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통지의 의무 : 임차인은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 차종변경(처분 포함)이 생겼을 경우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일부는 기계식주차장(장애인주차면 제외)으로 그로 인해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2.1m로 일부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고지합니다.

나. 용도별 증빙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10.04.(수)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차종		증빙서류	부수
장애인용 자동차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가액 증명서류	각 1통
유자녀용 자동차		- 유자녀(임산부 포함) :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가액 증명서류	각 1통 (임산부일 경우 임신증명서 1통 추가)
생 업 용	자동차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 자동차 사진, 자동차 가액 증명서류	각 1통
	이륜차 (125cc이하)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 자동차 사진, 이륜차 가액 증명서류	각 1통

※ 자동차가액 조회 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 자동차 기준가액 조회

※ 이륜차 가액 기준 : 해당 연도 이륜차 시가표준액

■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청약 시 주택형별로 1건만 가능하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인 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은 임차인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갱신 계약 시 자격요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릅니다. 또한 당첨 후 주택 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 유형으로 접수하고, 소득·지역요건 없으며 경쟁 시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100%(일반공급), 300%(특별공급)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추첨 시 청약 신청한 주택형별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 예비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3.10.04.(수))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10.04.(수)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10월 05일부터 2004년 10월 04일 사이에 출생한 자)
- ② 미혼
- ③ 무주택자
- ④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 (신청자 포함 3인 기준)
-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⑥ 2023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9,900만원 이하

- “해당 세대”란 주민등록등본 기준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전년도(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2년도 100%	3,353,884 원	5,005,376 원	6,718,198 원	7,622,056 원	8,040,492 원
2022년도 110%	3,689,272 원	5,505,914 원	7,390,018 원	8,384,262 원	8,844,541 원
2022년도 120%	4,024,661 원	6,006,451 원	8,061,838 원	9,146,467 원	9,648,590 원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61,147원)* 합산하여 산정
-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 소득) / 2

3) 특별공급 선정 기준 및 방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10.04.(수)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순위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 (입주 호수 변경은 불가)

- 1) 소득 기준
 - 1순위 : 기준소득 100% 이하, 2순위 - 기준소득 110% 이하, 3순위 - 기준소득 120% 이하
- 2) 지역 기준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 3순위 : 그 외 지역
- ※ 동일 순위 경쟁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됩니다.

- 특별 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태로 접수하여, 상기 소득 및 해당 지역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발생 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 특별공급 제출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10.04.(수))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3.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						
4. 지역우선공급 증빙자료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6. 월평균 소득(해당 세대원 전체) 및 자산 현황 확인서						
7. 공급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계약 시 현장에서 작성				
8. 서약서						
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3년분 /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등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직접 방문하여 발급			
소득 자료	11.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인터넷)				
	12. 소득자	무소득자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신규취업자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해당 직장
			개인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법인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자산 자료	13.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금융, 주식, 보험 등 전체) 발급 후 작성 -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대출 전체) 발급 후 작성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로 확인		
			금융결제원(인터넷)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14.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해당자만 제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우			
15.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자동차 소유·운행자인 경우			
15.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홈페이지 : <https://www.cheonho2030.com> 인터넷 청약 신청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입주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 : 2023.10.12.(목) ~ 2023.10.17.(화)까지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에 자동차 등록요청 세대의 경우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은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서류 미제출자는 별도의 연락 없이 당첨자격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3.10.04.(수))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10.04.(수))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10월 05일부터 2004년 10월 04일 사이에 출생한 자)
- ② 미혼
- ③ 무주택자
- ④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 (입주 호수는 변경 불가)

1)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3.10.04.(수))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10.04.(수))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10월 04일부터 2004년 10월 05일 사이에 출생한 자, 신청자만 해당)
-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③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 ④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혼인 후 2,555일, 1983.10.05.~2004.10.04 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 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 ② 신청자의 배우자
 -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 (입주 호수는 변경 불가)

3) 입주공급 선정기준 및 방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10.04.(수))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 일반공급 제출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10.04.(수))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혼부부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계약 시 현장에서 작성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5. 공급신청서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직접 방문하여 발급
6. 서약서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3년분 /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9.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포	자동차 소유· 운행자인 경우
10.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홈페이지 : <https://www.cheonho2030.com> 인터넷 청약 신청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입주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 : 2023.10.12.(목) ~ 2023.10.17.(화) 까지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에 자동차 등록 요청 세대의 경우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은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서류 미제출자는 별도의 연락 없이 당첨자격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청약 신청 방법

- 신청접수 일정 : 2023.10.05.(목) ~ 2023.10.10.(화)
- 청약방법 : <https://www.cheonho2030.com> (본인인증 후 인터넷 청약 신청)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천호역 효성 해링턴 타워 입주지원센터(02-488-7980)를 통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혹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착오 안내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으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 시 신청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해당 청약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검증)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대행을 위한 방문청약은 진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또는 계약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인해 관련 안내문과 문자 등이 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시 반드시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당첨자 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사실 및 계약일정 등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계층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예비신혼부부인 경우 구성될 세대 기준) ○ 제출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 소명 통보를 받은 분께서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의 기간까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임대차 계약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심사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서류는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는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분은 최대 6개월, 임차인으로 선정되신 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합니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사업 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연락이 안되거나, 당첨을 포기하실 경우, 또는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었으나 소명치 못하실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다음 예비입주자로 공급됩니다. ※ 당첨 이후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된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당첨 및 계약 권리는

	<p>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p> <p>※ 계약 시에는 원본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p>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유형별로 청약 대수가 공급 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100%(일반공급), 300%(특별공급)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나 잔여 공실에 대해서는 동,층,호 구분 없이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 예비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지정기간 : 2023.10.12.(목) ~ 2023.11.17.(금) ○ 계약금 납부 계좌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금융기관 : 국민은행 예금주 : ㈜이시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입주 시 잔금 납부 확인,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 및 비밀번호를 드리며,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열쇠 불출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100만원)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임대사업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 시기는 2023.10.12.(목) ~ 2023.11.17.(금) 중 선택하여 입주하시면 됩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월 임대료의 기산일은 입주일로부터 발생하며, 월 임대료는 당월납이며, 납부일은 매월 27일입니다.(공휴일 등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 월 임대료는 실입주일과 열쇠 및 비밀번호 불출일 중 빠른 날부터 발생하며, 매월 27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주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잔금 납부 및 열쇠 불출 완료시점)부터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 월 임대료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추가 서류제출 확인,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입실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임차인 만족도 조사, 거주자 실태 조사, 임차인 무단전대 조사, 자동차 가액 조사 등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수집 정보: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사항 등 ○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반사항 발생 시 입주자는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관리 방안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울시 방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최대 거주기간 및 계약갱신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 단위로 5%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 한도에서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갱신계약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 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즉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임차인이 갱신계약하는 경우 - 신혼부부의 경우 위 자격요건의 연령 및 혼인 요건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6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추첨

■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23.10.11.(수) 17시 예정
- 당첨확인 : 홈페이지 <https://www.cheonho2030.com>
- 당첨자는 청약자가 청약 신청 시 직접 입력한 자격요건에 의해 선정하며, 당첨자 서류검수 결과 실제 자격요건이 입력한 자격요건과 다르거나 본인의 입력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니 청약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은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방식을 통해 당일 오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당첨자 발표 시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예비자(공급유형별 주택모집호수 100%(일반공급), 300%(특별공급) 비율로 추가 추첨)는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핸드폰 번호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이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변경 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사실은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개인 이메일, 연락처 등으로 별도 통지는 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공급 일정은 사업 주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 동호수 추첨

- 당첨자 :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 동호수가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 예비당첨자 :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사업 주체가 정한 방식에 의해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추첨 및 배정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능합니다.)

7

계약안내

■ 방문 계약 일시

구분	계약일자	계약시간
당첨자	2023.10.12.(목)~2023.10.17.(화)	평일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당첨자에게 계약일자 및 시간 개별 안내

■ 방문 계약 장소 및 유의사항

- 입주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610, 천호역 효성 해링턴타워 2층
- 당첨자는 아래의 준비물과 서류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임대보증금 (계약금 및 잔금)	국민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주)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상기 임대보증금 납부 관련 금융기관 및 납부계좌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당사 홈페이지 및 당첨자분들에게 개별 고지 예정입니다.

■ 공통 준비물 및 제출서류

준비물	유의사항
① 계약금 이체 수단 (OTP, 보안카드 등)	현장 계좌이체 가능, 현금 수납은 불가 ※ 계약금 납부 계좌 : 국민은행, (세대 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예금주 : (주)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② 본인 도장	본인 서명 가능
③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중 택1
④ 계약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원본 일체	발급기관 : 정부24(인터넷),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 추가 서류는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 대리 계약 시 추가 준비물 :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지정된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당첨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신혼부부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임대보증금 금액 및 환불 규정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23.11.17.(금)까지 납부하되, 실입주 이전 또는 실입주일 당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되고 위약금 100만원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임대사업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1. 부설주차장 설치·운영계획

○ 부설주차장 배분

- 부설주차장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지 목적은 유휴공간인 주차장면을 외부개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대수입을 각 세대 당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함

구분		계획대수	계획비율(%)
계		521	100
필수 주차공간	소계	131	25
	장애인	16	3
	비주거(상가 등)	25	5
	유자녀	52	10
	생업용	38	7
활용가능 주차공간	소계	137	26
	거주자 우선주차	52	10
	나눔카	52	10
	외부정기 자동차	33	6
여유 주차 공간		253	49

※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배정원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유형별 주차료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구분		정기권료(월)	비고
필수 주차공간	장애인	20,000	강동구 거주자우선 주차금액의 50%
	유자녀	40,000	
	생업용	40,000	
	비주거(상가 등)	40,000	
활용 주차공간	자치구 거주자우선 주차	40,000	강동구 시설관리공단 협의
	나눔카	120,000	나눔카 업체 협의 후 계약 진행
	외부정기 자동차	120,000	인근 월 주차요금 반영
여유주차공간 필수 또는 활용 원칙		120,000	인근 월 주차요금 반영

○ 수용가능 차종 (기계식 주차장 사양 이내/기계식 주차장 1,2호 동일)

구분		SEDAN(에쿠스급 이하)	
자동차 제한	전장	5160mm	
	전폭	2100mm	사이드미러 포함
	전고	1550mm	
	중량	2200Kg	
제외차종		개조자동차, 리무진류, 스타렉스류, 수용가능초과 자동차(G90)은 제외	

-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배정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 될 예정입니다.
-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이 아닌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외부정기 자동차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 ※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나눔카 이용확대 및 주차면수 탄력적 운영 예정입니다.
- ※ 주차계획 및 징수·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나눔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 해당 단지 일부는 기계식 주차장(장애인주차면 제외)으로 그로 인해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이륜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 해당 단지는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2.1m로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주차장 운영 수입 활용 계획

- 주차장 수익은 전액 입주자관리비 절감 활용을 전제로 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협의(동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2. 커뮤니티시설 운영계획

시설명	전용면적	위치	설치목적	내용
게스트하우스	189.69㎡	지상 2층	생활편의 공간	입주민의 가족, 친구 등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일일 숙소공간을 제공하여 편의 도모
회의실	97.73㎡	지상 2층	생활편의 공간	회의공간 대여, 원데이클래스, 청년들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작은도서관	209.73㎡	지상 2층	문화생활 공간	열람실, 업무공간을 구성하여 개인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업무 및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청년운동센터	474.15㎡	지상 2층	건강활동 지원	최신 운동시설 및 스트레칭 존과 별도GX공간을 마련하여 입주민의 활력있는 삶 및 건강 증진지원
도움센터	88.90㎡	지상 2층	생활편의 공간	매니저가 직접상주하며 대여 물품대여, 시설예약, 불편사항 접수, 안내 서비스제공

○ 운영목적

- 신혼부부들의 사고모임과 학업 및 취업에 지친 청년들에게 사색할 수 있는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사회활동이 보다 폭 넓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 커뮤니티시설 기본운영 방향

- 입주자 편의 도모 및 모임/행사, 원데이클래스, 청년들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

한 회의실 운영

- 입주민 방문객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일일 숙소 공간인 게스트하우스 운영
 - 입주민 기증도서를 비치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 입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청년 운동센터 운영
-
- ※ 해당 시설 운영 일정은 입주 후 운영계획 수립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 해당시설 이용요금 중 일정 부분은 부대수입으로, 각 세대 당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계약자 관리, 시설 관리, 임대 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해당시설 변경 필요 시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향후 변경하여 결정하고, 설치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 ※ 해당시설은 입주민 전용공간으로 외부인의 이용이 제한되며 입주민의 휴식 및 업무 등에 활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3. 부대시설 환경

○ 주택환경

세대 내부 환경		
구분	주요시설	비고
현관 수납장	현관 신발장	전세대 포함
욕실 가구	욕실장	
주방가구 및 빌트인 가전	주방가구/싱크대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세탁기 8KG급	
	빌트인 2구 쿡탑 (청년, 신혼부부 세대 2구)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청년 세대 1대, 신혼부부 세대 2대)	
단지 내부 환경		
주차장	자주식: 457대, 기계식 : 64대 (장애인 16대, 나눔카 52대 포함)	지하1층 ~ 지하7층
재활용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함	지하1층
관리사무소	주차관리실, 방재실	지하1층
커뮤니티시설	회의실, 북카페, 청년도서관 등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 지상2층
무인택배보관함	무인택배보관장소	지하1층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보관장소	지하1층
개별실외기실	세대 실외기 보관장소	각층
엘리베이터	주거용 8대, 상가용 2대	

-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대체 및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 단지 유의사항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는 공공임대 264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636세대가 혼합된 단지입니다.

■ 공동사항

-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입니다.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운영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주차장 운영 및 커뮤니티 시설 계획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운영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주차장 면수(기계식 포함)의 15% 범위에서 나눔카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실제 시공 시 표기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 시 제작된 것으로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변경),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에 따라 게시된 전자팸플릿의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 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부대시설(작은도서관, 청년운동센터, 회의실 등)의 이용은 추후 선정되는 관리주체의 운영계획에 따라야 하며, 입주 전까지 공간 내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별 운영계획에 따라 부대시설 이용에 있어 별도의 관리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 및 공작물(광고탑, 통신안테나 등)의 설치를 금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 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의 경우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등)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공부정리 절차 및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부지경계 및 대지경계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경라인(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각종 인쇄물, CG 이미지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 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습니다.
- 타입별로 서비스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 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 근린생활시설 에어컨 실외기가 일부 세대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 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주부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자동차 출차 주의등과 장내 경보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인접 건물로 인한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 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퇴거 시 임대보증금의 일부(300만원)를 유보금으로 우선 공제하며, 그 유보금에서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을 정산 후 14일 내에 반환됩니다. (임대사업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여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셔야 하고 승강기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등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저해 요인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 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며 어길 시에는 세대 전용부분 시설 물에 대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전력승압은 할 수 없으며, 화재위험성이 큰 전열기구등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임차인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임차인모임을 통하여 임대사업자 및 그 관계자에게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도난 또는 화재 시 임차인이 인명 및 재산상에 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세대 냉장고 가동 시 제품 특성상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 시 입주금지 및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모든 공간(주택 전용부와 공용부를 모두 포함한 전체공간) 및 단지 내 외부공간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적발 시 즉시 퇴거 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도배 및 냄새제거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과도한 소음, 폭언, 폭행 등 공동주택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적·윤리적 문제 행위가 적발 될 경우, 향후 제정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입주지원센터를 통해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 내용은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계 법령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 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지환경

- 사업대상지는 지하철 천호역 8번 출구에서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지하철 인접 역세권에 건축하므로, 지하철 선로와 가깝게 위치하고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주동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 주변 단지의 신축,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선정은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되므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실 변경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호실 교환도 불가합니다.
- 단지 지하1층~지상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단지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자동차 출입구는 자동차 출입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 규격 수량 등 및 수목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및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설계 동별 설계 세대 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자재 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 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설치된 옥상층에 환기를 위한 벤츄레이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세대의 경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층에 정화조 배기팬, 세대주방 및 욕실 공동배기용 배기구, 근린생활시설 배기용 장비들이 설치되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유의사항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 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의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바, 공간 내 일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실내 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퇴거 시에는 입주 시 제공된 품목은 원상회복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확인된 후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신품비용과 함께 설치비용이 추가로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바닥 마감재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석재,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단위세대 기본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빌트인 가전으로 세탁기, 냉장고, 시스템에어컨, 쿡탑(인덕션) 등이 설치되며,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세부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용량,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해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대체 및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 세대 내부를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가하며, 불법개조로 인한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공사 귀책 사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겨울철 입주 시에는 구조체가 축열 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 손실로 인해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 지상2층에는 비주거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외부인의 통행으로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경우 동일한 타입 간 호수별 평면 레이아웃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임대사업자인 (주)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 주택을 자산보관기관인 엔에이치투자증권(주)에 수탁할 예정입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이동통신사업자 소관 사항으로 입주 시 설치되지 않아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고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철거 시 철거 비용이 발생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인허가 당시 기준 공용면적에서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공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521대 [자주식 457대, 기계식 64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사(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상2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 지상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기계식 주차타워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반려동물물 키울 수 없고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되며, 적발 시 주의 조치 후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에는 소음, 진동 및 다중의 집객으로 인한 혼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세대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주·부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 이용 등으로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자동차 출차 주의등과 경보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인접 건물 또는 향후 건축될 수 있는 건축물로 인한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 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1층 ~ 지상2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등과 연결된 통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로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청년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방문객에 대하여 무료주차 또는 할인 주차가 허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보증약관 주요 내용

○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보증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줌.
2. 공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분양전환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중에서 임대주택(세대)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세대별 보증금액 이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금액】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을 말합니다. 보증금액은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으로 하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3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법 부칙<2015.8.28.> 제6조 제2항에 따라 구(舊)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채권자가 제4조제1항제3호의 보증사고 발생 이후에 주채무자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5.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6.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7.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8. 보증서 발급 시 보증조건과 다르거나 보증조건을 공사의 동의없이 임의변경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9.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보증채권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사의 구상권 행사(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등)가 제한되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나. 임대차계약 개시일(개시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증액·갱신 포함)상 확정일자를 갖추어(법인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
 - 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이후 거주이전 또는 타주소지 전입신고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15.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제3자로부터의 압류·가압류, 전부·추심명령 등으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6. 보증채권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 등에 따른 배당요구, 채권신고 등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 또는 보전하지 않아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7. 보증채권자가 제3조(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를 위반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8. 보증채권자가 제12조(대위 및 구상)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9. 보증서 발급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보증서 발급 시의 보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 가. 주채무자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모든 담보권 설정금액의 합계액이 보증서 발급 시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나. 주채무자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모든 담보권 설정금액의 합계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보증서 발급 시 주택가격을 초과하게 된 경우 (다만, 주택가격 초과금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동 금액을 담보권 설정금액에서 공제함)

다. 임대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20.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 제3조 (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

- ①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사전동의 없이 주채무자 등으로부터 저당권 설정 등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②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③ 보증채권자는 공사에 신탁등기 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사고 발생 이후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④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2.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연대보증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경·공매의 개시결정, 채권신고, 배당요구 등 경·공매 관련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4.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보증사고 사유가 없어진 경우
 6.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7.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실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경우
 8.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제3자로부터 압류·가압류, 전부·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공사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 ⑤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임차목적물의 경매,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또는 회생절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 등에 따른 배당요구, 채권신고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 또는 행사해야 하고, 공사가 구상채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⑥ 보증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사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4조(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된 경우(목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종료된 경우를 말함)로서 해당 종료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때
 2.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3. 보증기간에 주채무자가 파산·부도, 사업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경우
- ② 제1항 제1호의 보증사고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갱신(목시적 갱신을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 ③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 ④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 공사의 보증이행 없이 해당 사고사유가 없어진 경우(2개 이상의 보증사고 발생시 그 보증

사고 사유 전부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 원상복구비용,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채무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목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 민법상 약정 및 법정해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경공매시 배당요구에 따른 해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천호역 효성 해링턴 타워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의 전대 행위 및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는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도 및 전대확인 등의 아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관리주체의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나. 민간임대주택을 대여 및 수익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

○ 상기 사유가 확인되는 세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기 납부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입주 후에 무단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퇴거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가 전대 확인 및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건물점검, 시설복구, 하자보수 등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위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 및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와 계약자 및 입주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및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소유 및 운행, 전입 사실 관련

○ 당첨자는 입주 시 즉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청년주택(1인 가구)의 당첨자는 당첨자 본인이 입주 시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첨자 본인 이외 동거인의 거주는 불가하고, 세대원에 대한 추가 등록 또한 제한됩니다. 신혼부부형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추가세대원 등록 및 동거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동거인 등록은 제한됩니다.

○ “임차인”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임대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대인 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주택(1인 가구)이나 신혼부부형 주택에서 허용되지 않은 동거인의 거주가 확인되거나 추가 세대원이 등록될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은 해지되고, 본 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하며,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퇴거 시 및 퇴거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천호역 효성 해링턴 타워 위치

천호역 효성 해링턴 타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87-1 일원



- 현장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610 (5호선, 8호선 8번출구 300m이내)
- 입주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610, 천호역 효성 해링턴타워 2층 입주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s://www.cheonho2030.com>
- 대표번호 : ☎ 02-488-7980 (입주지원센터)